[필수] 공제(보험)금 청구를 위한 상세 동의서

귀하는 개인(신용)정보의 수집·이용 및 조회,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,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개인(신용)정보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본 동의는 '공제(보험)금 청구'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관련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

1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

수집·이용 목적	– 보험사고·보험사기 조사 및 공제(보험)금 지급·심사(손해사정 또는 의료자문 포함) – 공제(보험)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및 교통사고 처리내역 발급 간소화 서비스 – 민원처리 및 분쟁대응, 금융거래 관련 업무
보유 및 이용기간	– **동의일로부터 거래 종료 후 5년까지** (단, 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) 위 보유 기간에서의 거래 종료일이란 "①보험계약 만기, 해지, 취소, 철회일 또는 소멸일 및 ②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(상법 제662조), ③채권·채무 관계 소멸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한 날 "을 말한다.

수집·이용 항목

고유식별정보	**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번호**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하십니까? ☐동의하지 않음 ☐동의함
민감정보	**피공제자의 질병·상해에 관한 정보(진료기록, 상병명 등), 보험사고 조사 (보험사기 포함) 및 손해사정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(경찰, 공공·국가기관,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, 증명서,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(신용)정보 포함)** 위 민감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하십니까? ☐동의하지 않음 ☐동의함
개인(신용)정보	
ㄴ 일반개인정보	성명, 주소, 생년월일, 이메일, 유·무선 전화번호, 성별, 국적, 직업, 피공제자와 수익자의 관계, 국내거소신고번호
ㄴ 신용거래정보	금융거래 업무 관련 정보(공제(보험)금 지급계좌 등), 공제(보험)계약정보(상품종류, 기간, 공제(보험)가입금액 등), 공제(보험)금정보(공제(보험)금 지급사유, 지급금액 등)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하십니까? ☐동의하지 않음 ☐동의함

2 제공에 관한 사항

제공받는 자	– 공공기관 등 : 금융위원회, 국토교통부, 금융감독원, 국세청, 보험요율산출기관 등 법령상 업무 수행기관(위탁사업자 포함) –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: 한국신용정보원 – 보험회사 등 : 생명·손해보험회사, 국내 재보험사, 공제사업자, 체신관서(우체국보험) – 금융거래기관 : 계좌개설 금융기관, 금융결제원 – 계약관계자 : 피공제자, 공제(보험)금 청구권자 – 보험협회 등 : 생명·손해보험협회 –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, 수협은행
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	– 공공기관 등 :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(위탁업무 포함) –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: 개인(신용)정보 조회,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법령에서 정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수행, 교통사고처리 내역발급간소화 서비스 – 보험회사 등 : 중복보험 확인 및 비례보상, 재보험금 청구 – 금융거래기관 : 금융거래 업무 – 계약관계자 : 손해사정내용 관련 정보 제공 – 보험협회 : 공제(보험)금 지급·심사 관련 업무지원(공제(보험)금 청구서류 접수 대행 서비스 등) –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, 수협은행 : 본 동의서 '1.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'중 '수집·이용 목적' 각 항목
보유 및 이용기간	–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(관련 법령상 보존기간을 따름)

* 외국 재보험사의 국내지점이 재보험금 청구 등 지원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외국 소재 본점에 귀하의 정보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.

제공 항목

고유식별정보	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? ☐동의하지 않음 ☐동의함
민감정보	피공제자의 질병·상해에 관한 정보(진료기록, 상병명 등), 보험사고 조사(보험사기 포함) 및 손해사정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(경찰, 공공·국가기관,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, 증명서,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(신용)정보 포함) 위 민감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? ☐동의하지 않음 ☐동의함
개인(신용)정보	
ㄴ 일반개인정보	성명, 주소, 생년월일, 이메일, 유무선 전화번호, 성별, 국적, 직업, 피공제자와 수익자의 관계, 국내거소신고번호
ㄴ 신용거래정보	금융거래 업무 관련 정보(공제(보험)금 지급계좌 등), 공제(보험)계약정보(상품종류, 기간, 공제(보험)가입금액 등), 공제(보험)금정보(공제(보험)금 지급사유, 지급금액 등)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? ☐동의하지 않음 ☐동의함

* 업무위탁을 목적으로 개인(신용)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업무 수탁자에게 귀하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 (홈페이지 http://www.suhyup.co.kr 에서 확인 가능)

3 조회에 관한 사항

조회 대상 기관	–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, 보험요율산출기관, 생명·손해보험협회
조회 목적	–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: 보험사고·보험사기 조사 및 공제(보험)금 지급·심사, 교통사고 처리내역 발급 간소화 서비스 – 보험요율산출기관 : 보험사고·보험사기 조사 및 보험금지급·심사, 법령에 의한 업무수행 등 – 생명·손해보험협회: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
조회 동의의 효력기간	해당 공제거래 종료 후 5년까지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.

조회 항목

고유식별정보	**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번호** 위 고유식별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? ☐ 동의하지 않음 ☐ 동의함
민감정보	**피공제자의 질병·상해에 관한 정보(진료기록, 상병명 등)** 위 민감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? ☐ 동의하지 않음 ☐ 동의함
개인(신용)정보	
└ 일반개인정보	성명, 국내거소신고번호
└ 신용거래정보	공제(보험)계약정보(상품종류, 기간, 공제(보험)가입금액 등), 공제(보험)금정보(공제(보험)금 지급사유, 지급금액 등)
	위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? ☐ 동의하지 않음 ☐ 동의함

Sh 수협보험

※ 필 수 기 재

동의일자 : 년 월 일

피공제자	서명(인)	친권자(후견인)1	서명(인)
수익자(청구인)	서명(인)	친권자(후견인)2	서명(인)

※ 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 후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서명하시고, 만14세 이상 미성년자는 미성년 본인이 직접동의 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 동의 후 친권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.
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 부모 모두가 각자 서명하여야 하며,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경우 부모 중 일방이 부모 공동명의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.

사고발생신고서 ■ 공제(보험)금 청구서 ■

FAX발신인 / 지점	
연락처 / 총매수	

「공제(보험)금 청구를 위한 개인(신용)정보 동의서」를 작성하여 공제금 청구서 및 청구서류(병원서류)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피공제자(공제대상자) 인적사항	☐ 생명(장기손해포함) ☐ 손해 (☐ 대인/☐ 대물) ☐ 화재 ☐ 단체복지 ☐ 기타				
상품명			증 권 번 호		
성 명		실명번호		연락처	휴대폰 :
					자 택 :
직 업		주소			E-mail :

다른공제(보험) 계약사항		[실손 가입여부(단체실손포함) : ☐ 예 ☐ 아니오]			
보험회사	보험종목	상품명	보험회사	보험종목	상품명
	(생명☐ / 손해 ☐)			(생명☐ / 손해 ☐)	

피공제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해당여부	☐ 예	※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경우 실손공제료를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. (문의 : 고객센터 1588-4119)

사 고 사 항					
발생일시		사고장소			
사고경위 (별지기재가능)					
사고결과					
병원명(진료과)		진단명		표준질병사인 분류코드	

※ 일회성 실손 통원의료비 등에 대하여는 진단서에 대체 할수도 있으니 상세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수익자 정보(입금 요청서)	※ 정당수익자가 맞는지 확인 후 기재요망				
성명		실명/사업자번호		피공제자 관계	
주소		연락처			
입금받으실 계좌	● 은행명 :	● 예금주 :	● 계좌번호 :		

고객 알림서비스 신청			
휴대폰 문자 서비스(SMS)	☐ 예	☐ 아니오	※ 사고접수, 진행단계, 공제금 지급 등
연락 받으실 휴대전화			

※ 수익자가 대리인일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위임장, 인감증명서 등)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
- 본인은 상기 기재사항을 사실 그대로 작성하여 귀회에 공제(보험)금을 청구합니다. 위 내용과 관련하여 고의로 사실과 다른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였거나 변조한 경우 공제(보험)금 청구권을 상실하게 됨은 물론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이며, 만약 공제(보험)금 수령 후에 해당 공제(보험)약관 또는 제규정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받은 공제(보험)금 일체를 반환하겠습니다.
- 보험사기(허위입원, 고의사고, 사고조작, 피해과장 등)는 범죄이며, 형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-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고객확인절차(KYC)를 이행하고 있으며, KYC대상 고객에 한하여 가까운 수협 영업점에 내방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공제금 청구 방법 (홈페이지/모바일/e-mail/팩스 접수는 청구액 200만원 이하에 한함)

- 홈페이지
  www.suhyup-bank 접속
- 영업점 방문
  전국 수협은행 및 회원조합 방문
- 모바일
  플레이스토어(앱스토어)에서 "수협은행 앱" 설치
- E-mail 접수 / 팩스 접수
  문의 1588-4119

청구자(수익자) 성 명 : (서명 또는 인)

20 년 월 일

사고공제금 청구서류 안내장

■ 청구서류

공통서류

◇ 공제금 청구서 및 개인(신용)정보처리 동의서
◇ 내방인 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)
◇ 통장사본(단,수익자 본인 내방 또는 수익자 본인 계좌송금 시 제외)
◇ 배우자, 자녀 보장상품은 피공제자와의 관계확인서류 필요
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)

◇ 진단서 등 청구서류 사본 접수 대상건
- 정액 청구공제금 200만원 이하 또는 실손의료비의 실제부담 총액 200만원 이하 (단, 통원은 금액제한 없음)

구분		진단서	사망 진단서	후유장해 진단서	입/통원 확인서	재해 입증서류	가족관계 등록부	기타
발급처		해당 의료기관				관공서/민원24참고		- 재해 입증이 가능한 관공서 서류로 대체가능(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) ※ 민원24(www.minwon.go.kr)등에서 발급 가능
사망	일반사망		○				○	-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- 제적등본(여성 피공제자 사망시 전호주 제적등본(결혼전) 추가제출) - 기본증명서(상세) 사망사실 기재 - 혼인증명서(상세) 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- 재해사고증명서류(재해사고시) - 위임장(수익자가 다수인 경우)및 위임장용 개인(신용)정보처리 동의서 - 수익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(주민센터 발급) * 기타 실종인 경우 법원판결문 및 실종판결이 명시된 가족관계등록부 등
	재해사망		○			○	○	
장해	일반장해			○				1. 후유장해진단서(영구·한시 여부 기재 /주민센터 제출용 장해진단서는 불가) - 장해 미확정시 사고일로부터 180일 경과후 발급 - 팔·다리관절 : AMA 방식의 운동각도(정상운동각도 포함)기재 - 척추장해 · '05.4.1 이전 AMA방식의 운동각도(정상운동각도 포함) 기재 · '05.4.1 이후 추체간 유합술 또는 고정술 시행 부위 기재 (단, '99.2.1 이후 추간판탈출증 장해는 후유증상이 명시된 후유장해 진단서 제출) 2.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 - 만성신부전 : 진단서(병명, 질병분류코드 명시),혈액투석지(최초투석일, 환자상태 기재) - 사지절단 : 진단서(병명, 질병분류코드 명시), X-Ray 결과지 - 인공관절치환술 : 진단서(병명, 질병분류코드, 치환일자, 부위 명시), 수술기록지 - 비장, 신장, 안구적출 : 진단서(병명, 질병분류코드, 적출일, 부위 명시), 수술기록지 - 장기전절제 : 진단서(병명, 질병분류코드, 절제일, 부위 명시), 수술기록지 3. 재해사고증명서류(재해사고시)
	재해장해			○		○		
기타	입원	○			○			- 진단서 또는 입·퇴원 확인서(진단명, 입·퇴원 일자 기재) 中 택일 가능 - 재해입원의 경우 재해입증서류 필요
	수술	○						1. 진단서 또는 수술확인서(진단명, 수술명 일자, 방법 등 기재) 2. 의무기록 사본(수술기록지) 3. 재해수술의 경우 재해 입증서류 필요
	통원	○			○			- 진단서(소견서·진료차트) 또는 통원확인서(진단명, 일자 등 기재) 中 택일 가능
	골절	○			○			- 진단서(소견서) 또는 입·퇴원(통원)확인서(진단명, 일자 등 기재) 中 택일 가능 - 골절확진에 한함(의증 제외)
치과치료		- 치과치료확인서(수협 양식), 진료기록지사본 단, 보철치료(틀니,브릿지, 임플란트)는 영구치 발거 전후의 X-Ray, 파노라마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서류 추가 제출						
진단	암, 뇌졸증, 심근경색, 치매	○	1. 진단서(진단명, 질병분류코드, 진단일자 등 기재) 2. 확정 진단의 근거 서류 - 암 또는 소액암 : 조직검사결과지 · 조직검사 불가능한 경우 : 방사선판독결과지(CT, MRI 등), 혈액검사결과지 - 혈액암(백혈병) : 골수검사 결과지, 혈액검사 결과지 - 뇌졸중 : CT, MRI 등 방사선판독결과지 - 급성심근경색증 : 관상동맥조영술결과지, 심전도결과지, 근효소결과검사지 등 - 치매 : CDR척도검사결과지, 뇌영상검사결과지(CT, MRI, SPECT등) 3. 의무기록사본 (초진기록 포함)					
해외병원		- 제출서류는 국내와 동일함 * 공제금 청구서에 단체보험 또는 여행자보험 가입여부 필수 기재 ※ 신속한 심사를 위해 가급적 영문(또는 중문, 일문)으로 발급된 진단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	

■ 실손의료비

구분		진단서 (병명확인서류)	진료비 세부내역서	영수증 (진료비 계산서)	영수증 (약제비 계산서)	세부내용
발급처		해당 의료기관				
실손입원		○	○	○	○	1. 진단명(질병분류코드)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[진단서, 입·퇴원 확인서] 2. 진료비영수증(카드전표는 증빙서류로 미인정) 3. 진료비세부내역서(비급여 발생시 제출) 4. 재해사고시 재해입증서류
실손통원	외래진료	○	○	○	○	1. 병명확인 서류 - 실제 부담금액 3만원 이하 : 청구서에 병명 기재 - 실제 부담금액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: 처방전(질병분류코드 기재) - 실제 부담금액 10만원 초과 : 병명확인서류 제출 * 병명확인서류 : 진단명/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서류(진단서, 통원확인서, 진료확인서, 소견서, 진료기록지 등) 中 택일 가능 2. 진료비영수증, 약제비영수증 (카드전표는 증빙서류로 미인정) 3. 진료비 세부내역서 (비급여 발생시 제출) 4. 재해사고시 재해입증서류
	처방조제	○		○	○	

주1) 병원발급서류는 병명, 병원직인, 환자인적사항 및 청구사유별 치료내역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, 청구서류는 원본기준입니다.
주2) 진단서 외 대체 가능한 서류는 기타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, 청구내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구비서류가 없을시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주3) 자세한 내용은 수협은행 홈페이지 (https://www.suhyup-bank.com)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, 문의사항은 수협공제 고객지원센터(☎1588-4119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Sh 수협보험